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현행제도 및 주요개정 사항 소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종합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한 제도로서 운영 13년을 맞이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소개한다.

최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건축물부문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자 건축물 인증제도 및 에너지성능 표시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정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면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녹조법」이라 함)을 제정하였다.

본 원고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근거법이 변경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미

우리나라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26.9%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김성하

에너지관리공단 녹색건축센터

kstar@kemco.or.kr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 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2013년 2월23일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의 근거인 「건축법」 제66조의2가 「녹조법」 제17조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예정이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연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건축주, 거주인, 건축물관리인, 시공사 등 건축물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2001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을 대

상으로 표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의 난방에너지의 절감률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자율적인 인증제도의 성격으로 시행되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침」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효율등급을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인증수요가 확대되었다.

2010년 「건축법」 제66조의2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의 근거조항이 신설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주관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인증대상이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되었으며, 1차 에너지소요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였다.

인증제도의 운영총괄은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이 제도 운영 총괄을 위탁받아 13년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인증서는 평가 후 운영기관의 검토를 거쳐 총 4개 인증기관에서 발급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01 인증기관 지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01 인증기관 지정), 한국토지주택공사('11 인증기관 지정), 한국시설안전공단('12 인증기관 지정)이 인증기관으로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001년 제도시행

〈표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연혁

년도	주요내용	관련 규정
2001년	제도 시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 (산자부 고시 제2001-100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 개정 (국무총리 지시 제2001-5호) * 공동주택 인증시작,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인증 취득 의무화
2004년	등급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개정 (산자부 고시 제2005-10호) * 인증등급 강화 (기준: 1등급 절감률 40% → 변경: 1등급 절감률 33.5%)
2008년	의무 강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지침」 개정 (국무총리 지시 제2008-3호) * 공공기관 신축 공동주택 2등급 이상 인증 취득 의무화
2009년	근거법 마련	「건축법」 제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설 * 제도 시행 법적 근거 마련 ('09.2) 후 국토부, 지경부 공동주관
2010년	대상 확대(업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지경부, 국토부 공동 고시) * 업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시행 및 공공기관 청사의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10.1)
2013년	근거법 변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근거법 변경('13.2)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칙」 제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예정

이후 2013년 현재 총 4번의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인증대상의 확대와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수요가 증가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다른 정책들과 상호 보완하여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향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현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구분된다. “예비인증”은 건축물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인증하는 것이며, “본인증”은 건축물 준공 승인 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은 신청인(건축주 등)이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인증기관을 선택하여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주택은 30일, 업무용은 5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서류보완이 발생할 시 그 기간은 평가 소요 시간에서 제외한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공동주택과 업무용의 인증기준이 다르며, 공동주택은 난방에너지

지열감률을 인증기준으로 업무용은 난방, 급탕, 냉방, 조명, 환기에 따른 1차에너지소요량을 인증기준으로 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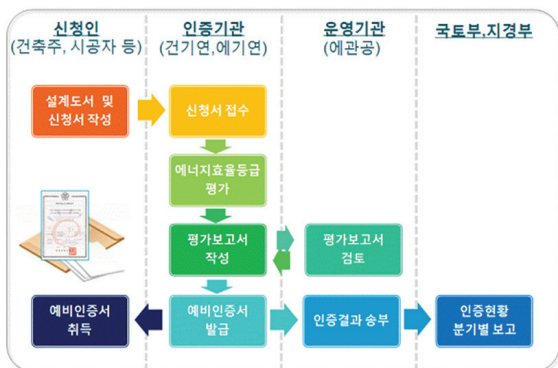
그림 1에 따르면, ‘12년 예비인증 기준으로 총 4개 인증기관에서 총 1,046건의 건축물을 인증하였으며, 그 중 공동주택은 753건, 업무용은 293건을 인증하였다. 이 중 1등급이 46%, 2등급이 48%, 3등급이 6%로서 인증을 취득하는 건축물은 의무취득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용 건축물은 98.9%가 1등급을 취득하였다.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실적이 3년 동안의 인증실적을 감안할 때, 13년 동안 공동주택 인증을 통한 홍보효과가 공공기관의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총 1,046건 중 663건이 공공 건축물로서 의무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고, 383건이 민간 건축물로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하였다. 제도 시행 13년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득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율적 인증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나 인증제도 브랜드화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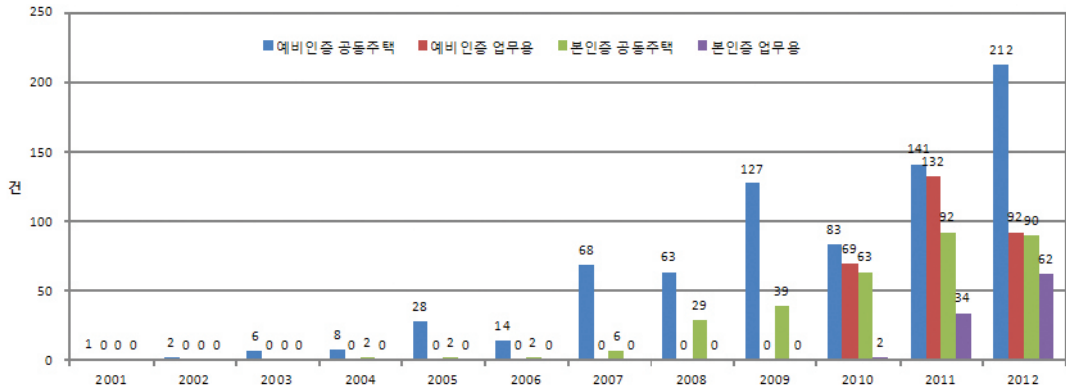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12년 현재 기준으로 212,781 TOE의 에너지가 절감되었고, 이산화탄소는 약 509,615 tCO₂ 절감되어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표 2 참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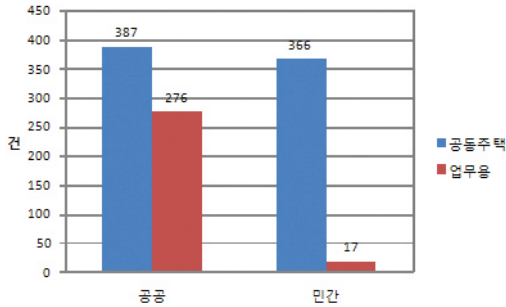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인증취득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가 있다. 다만, 녹색



[그림 1] 연도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절차



[그림 2] 연도별 인증실적(2012.12.31 기준)



[그림 3] 인증실적 공공·민간 구분 (2012.12.31 기준)

<표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효과(2012.12.31 기준)

		총 인증실적 (건)	에너지 절감량 (TOE)	온실가스 감축량 (TCO ₂)
예비인증	공동주택	753	146,104	341,524
	업무용	293	66,680	168,090
	계	1,046	212,784	509,614
본인증	공동주택	325	55,878	130,633
	업무용	98	13,375	33,940
	계	423	69,253	164,573
총계		1,469	282,036	674,187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친환경적 성능 모두를 만족하는 건축물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비용의 경감 및 인증취득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표 3~6 참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와 타 규정과의 관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지경부고시 제 2012-18호, 2012.2.8)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은 1등급을 취득하

<표 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세 감면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 ~ 90 미만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취득세 15%	취득세 10%
친환경인증 우수 등급	취득세 10%	취득세 5%

〈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재산세 감면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그 외 등급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재산세 15%	재산세 10%	재산세 3%
친환경인증 우수 등급	재산세 10%	재산세 3%	
그 외 등급	재산세 3%	-	-

〈표 5〉 건축기준 완화

구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또는 EPI 90점 이상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또는 EPI 80 ~ 90 미만
친환경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친환경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표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PQ) 가점 부여

구분	가점
본인증 1등급	1.0 점
본인증 2등급	0.5 점

여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2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인증등급 건축물 등이 추가된 경우, 그 건축물 등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적용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대상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취득 적용대상 및 적용일에 대한 판단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과 개정일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무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향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은 타 인증제도에서 에너지부문 지표로 활용된다.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공동주택, 주거복합, 업무용 건축물의 에너지부문 평가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취득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중 유리한 점수로 에너지부분 평가에 활용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방향

새로 시행된 「녹조법」의 제17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제도운영 관련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의 규정사항 중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인증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개정된다.

제정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은 본칙15개와 부칙3개로 구성되며, 규정사항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규칙과 고시의 규정사항이 조정된다. 시행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인 2013년 2월 23일로 규정하고 인증대상 및 등급적용에 관한 시행일을 특례로 정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은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 운영

기관의 업무범위 신설, 인증기관의 관리 신설, 인증 등급 변경, 인증절차 변경, 인증 유효기간 신설, 재평가 절차 신설, 인증건축물 관리 신설 등이 있다 (표 7, 8 참조).

축 공동주택'과 '신축 업무용'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인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되어 시행된다(표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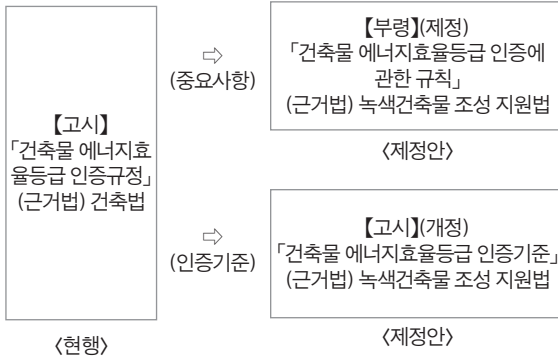
인증건축물 대상확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프로그램이 모든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해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신

운영기관의 업무범위 신설

인증대상 확대와 인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증평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관리 및 교육에 대한 업무를 운영기관으로 위임하였다(표 10 참조).

〈표 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규정 개정방향



인증기관 관리 신설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증기관의 인증능력 유지·점검을 위해서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필요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기관 확대에 대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표 11 참조).

〈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규정 개정 목차

구분	규칙 (제정안)	고시 (개정안)
본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적용대상) 제 3조 (운영기관의 지정 등) 제 4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 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 6조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제 7조 (인증 신청 등) 제 8조 (인증 평가 등) 제 9조 (인증 기준 등) 제 10조 (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 11조 (재평가 요청 등) 제 12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 13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제1조 (목적) 제2조 (인증 제출서류 등) 제3조 (인증기준 등) 제4조 (재평가) 제5조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제6조 (인증 수수료) 제7조 (인증운영위원회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인증 적용대상 및 인증 등급에 관한 특례) 제3조 (인증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제2조 (경과조치 등)

〈표 9〉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안)

구분	현행고시	제정안
인증대상	· 인증기준이 고시된 용도의 건축물 · (신축)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 기숙사, 오피스텔 제외	· (신축·기축) 단독주택, 공동주택,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모든 용도 건축물 * 기숙사, 오피스텔 포함

〈표 1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운영기관 업무범위 신설(안)

구분	제정안 (신설)
에너지 평가 전문가 감독업무	· 녹조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 관련 전문가의 양성, 관리, 교육 및 감독에 관한 업무

〈표 1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관리 조항 신설(안)

구분	제정안 (신설)
인증기관지정 유효기간	·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증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5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함
인증기관의 관리	· (유사업무 수행 제한) 해당 인증기관이 평가한 건축물과 관련하여 진단, 인증 대행, 컨설팅 및 중개 등의 용역 업무를 수행을 제한

〈표 1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건축물 대상 확대(안)

구분	현행고시	제정안
효율등급	· 5개 등급으로 구분 (1~5등급)	· 10개 등급으로 구분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인증등급 확대 · 강화

공동주택의 절감률 기준을 1차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거용 이외 건축물의 인증 기준과 동일한 정량적 소요량 지표로 통일하였으며,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효율등급 인증이 가능해지므로 등급단위를 5개에서 10개로 변경하여 에너지효율이 낮은 기존 건축물까지 인증이 가능하도록 포함하였다. 또한 주거용 이외 건축물의 1등급 기준은 기존 등급대비 약 15%를 강화하여 고효율 건축물 보급 촉진을 유도하였다(표 12 참조).

인증절차 시점 및 절차 변경

현행 인증신청 시점기준을 행정 절차일을 기

준으로 인증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인증확대에 따라 신축 건축물 인증과 기존 건축물 인증을 구분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다만,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외적인 상황에는 허가·신고·또는 사업계획 승인 혹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표 13, 14 참조).

인증서 유효기간 신설

건축물 인증서상의 에너지성능은 현재 상태를 항상 반영함으로써 인증서의 공신력 확보 및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인증서 유효기간을 신설하였으며, 예비인증과 본인증 효력의 지속기간을 명확히 하였다(표 15 참조).

〈표 13〉 인증기준 변경(안)

등급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m ² ·년)
1+++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표 14〉 인증절차 시점 변경(안)

구분	현행 고시	제정안
예비인증 신청	· 명확한 규정없이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만 명시 (예비인증) 건축물의 완공전 (본인증) 건축물의 준공승인전	· 허가· 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
본인증 신청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에 인증을 신청
신축· 기존 건축물의 본인증	· 구분없음 (신축만 가능)	· (신축)사용승인· 사용검사 3년 이내 · (기존)사용승인· 사용검사 3년이후 * 기존건축물은 평가보고서에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첨부토록 함

재평가 절차 신설

신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인증평가결과 또는 인증취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가 가능토록 재평가 요청절차를 신설하였다(표 16 참조).

인증건축물 관리 근거조항 신설

예비인증받은 건축물의 본인증 관리 및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 확인절차를 신설하여, 인증관리 및 인증건축물의 성능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예비인증시 제도

〈표 15〉 인증서 유효기간 신설(안)

구분	제정안 (신설)
인증서 유효기간	· (본인증) 인증일로부터 10년 · (예비인증)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

〈표 16〉 재평가 절차 신설(안)

구분	제정안 (신설)
재평가 요청	· 인증평가 결과나 인증의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평가시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함

적 지원을 받은 경우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인증건축물 관리를 강화하였다(표 17 참조).

19 참조).

맺음말

인증 수수료 세분화

인증대상이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면적규모 단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및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표 18,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13년 2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많은 부분이 확대되고 발전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 발전 여지가

〈표 17〉 인증건축물 관리 규정 신설(안)

구분	제정안(신설)
예비인증 신청 등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예비인증 시 제도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함
사후관리	·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8〉 인증 수수료 변경 (안)

구분	현행고시	제정안(신설)
수수료	(공동주택) 최저 면적규모 10,000 m ² (업무용) 최저 면적규모 5,000 m ²	(주거용) 최저 면적규모 85 m ² (주거용 이외) 최저 면적규모 1,000m ²

〈표 19〉 인증 수수료 개정안 신설(안)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전용면적	수수료(원)	수수료(원)	
85 m ² - 135 m ² 미만	700,000	1,000 m ² 미만	1,900,000
135 m ² - 330 m ² 미만	800,000	1,000 m ² - 3,000 m ² 미만	3,900,000
330 m ² - 660 m ² 미만	900,000	3,000 m ² - 5,000 m ² 미만	5,900,000
660 m ² - 1,000 m ² 미만	1,100,000	5,000 m ² - 10,000 m ² 미만	7,900,000
1,000 m ² - 10,000 m ² 미만	3,900,000	10,000 m ² - 15,000 m ² 미만	9,900,000
10,000 m ² - 20,000 m ² 미만	5,300,000	15,000 m ² - 20,000 m ² 미만	11,900,000
20,000 m ² - 30,000 m ² 미만	6,600,000	20,000 m ² - 30,000 m ² 미만	13,900,000
30,000 m ² - 40,000 m ² 미만	7,900,000	30,000 m ² - 40,000 m ² 미만	15,900,000
40,000 m ² - 60,000 m ² 미만	9,200,000	40,000 m ² - 60,000 m ² 미만	17,800,000
60,000 m ² - 80,000 m ² 미만	10,600,000	60,000 m ² 이상	19,800,000
80,000 m ² - 120,000 m ² 미만	11,900,000	-	-
120,000 m ² 이상	13,200,000	-	-

* 색은 신설되는 수수료 부분

남아있다.

특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건축물의 대다수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대상인 점에서, 자율적 인증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의 개발 및 인증제도 브랜드화 등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이제 시작단계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범사례 및 평가방법의 보완, 인증기관 확대, 에너지 평가사와 인증기관과의 업무분담 등과 관련된 지속적인 제도 개

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건설사업자, 건축주, 사용자 등 관련 주체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 · 공포문
2.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안」 